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9 | 2026.2.9 (2026.2.2~2026.2.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사’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품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강화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참여자·배출권 거래소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 시장 안정화 조치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하여 소액·다수 집단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집단소송법안(김현정의원 등 16인)**」,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2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8인)**」 ,

딥페이크 관련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3인)**」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5인)**」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확대하는 등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

지역주택조합에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합리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5인)」,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대정부질문>이 2.9. ~ 2.11. 3일간 실시됩니다. <과방위>에서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행안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7
- 「KS인증제도 개편방안」 발표(산업통상부) 8
- 「경제형별 합리화 TF」 2차 회의 개최(재정경제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1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1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2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4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4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집단소송법안(김현정의원 등 16인) 1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최혁진의원 등 10인) 1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8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1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1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19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3인) 21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5인) 2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 22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3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23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5인) 24
-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2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5
- 직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2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6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9인) 26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5인) 2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6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본회의 일정
-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환경]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 [지적재산권]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지적재산권] 특허권 균등침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유라시아] 러시아 현지 자회사 운영 현황과 법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 21. - 2026. 2. 3.)
- [금융] 금융회사 SaaS 이용 관련 망분리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 [시장퇴출]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 [감독강화]‘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 [사각지대]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 [거버넌스]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 (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2026-02-04
-------	--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하였음

정부는 지난해 8월「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이번 방안은 지난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1. 회계부정 지시자(임원 및 실소유주)에 대한 시장 퇴출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되어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아울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를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됨

2.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無理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함. 감사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꼼꼼히 살펴봐야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데, 시간을 과도하게 줄일 경우 감사 품질이 저하되어 회계부정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를 한 경우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심사·감리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할 예정임. 점검 결과 실제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철저한 감사를 유도해 나갈 방침임

3.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현재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 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감사인의 독립성은 낮아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앞으로는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 감사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함.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임

산업통상부

「KS인증제도 개편방안」 발표

- 빠르게 진화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60여 년 만의 제도 개편
-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사’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 품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2026-02-03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사’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② 불법불량 KS인증 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③ 품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음

1.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사’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음.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력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2.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함.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함.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됨

3.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임

*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재정경제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 개최

- 既발표 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3차 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발굴 요청
-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확정·발표 계획

2026-02-04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힘

재정경제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작년 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였음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하였음.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하였음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6-02-05 시행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026-08-04 시행 예정
-------	------------	------------------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08-04 시행 예정
-------	-------------------------------	------------------

이 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2-03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2-03 시행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이 법에 따른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 다수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2-04 시행 예정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2-03 시행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 후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2.02. ~2026.03.16.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입찰 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

산업통상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05. ~2026.03.17.
-------	--------------------	-----------------------------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안전성조사 절차,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등을 개정코자 함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과](#) (전화: 043-870-5415)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03. ~2026.03.16.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배출권 거래소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 시장 안정화 조치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 (안 제10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구체화

②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신설 및 기준 완화 등 (안 제27조 등)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반영하여, 재난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될 경우 추가 할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
- 배출효율 우수업체 등 배출권 잉여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할당대상업체가 추가 할당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③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관리·감독, 검사 (안 제37조의14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 마련
- 기후부장관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권,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

④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안 제38조)

-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된 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경매 낙찰 가격이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경매 보류 가격 범위를 이탈할 시,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및 유상할당 공급량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 규정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전화: 044-201-6590, 팩스: 044-201-6594\)](tel:044-201-6590)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2.02.
~2026.03.16.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전화: 044-201-4227\)](tel:044-201-422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김현정의원 등 16인)	2026-02-03 발의
최근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고 그 소송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드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별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임. 결국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하여 소액·다수 집단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최혁진의원 등 10인)	2026-02-06 발의
현행법은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026-02-02 발의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 60일을 기준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올리는 등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소비자 카드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의 대금 정산 기간이나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 절차·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은 다소 과도한 기간이라는 지적임

이에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2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유동성을 확충하는 등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8조제2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026-02-02 발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34조 및 제45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2026-02-02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

2026-02-04 발의

지난해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임이 드러났음. 이로 인해 국민 다수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됨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개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 대부분의 피해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액에 그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그 유인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결국 광범위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실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동의를결제도 도입이 대두되고 있음. 동의를결제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피해자는 수년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 없이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법률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8인)

2026-02-06 발의

코스닥은 기술·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상장·감시·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신속한 시장 운영이 어려웠고, 그 결과 코스닥의 경쟁력과 신뢰가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도 높이고자 함

재정경제기획
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
인)

2026-02-02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9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2026-02-05 발의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수익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사용·수익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5조)

재정경제기획
위원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2026-02-05 발의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업체가 2021년 발주한 도시철도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납품 기한이 경과하도록 전량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서울시가 395억 원에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을 추가 계약함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선금금을 계약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금 588억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하여 선금금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납품한 차량의 중량 기준 초과·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제작 등 문제를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과 추가 계약을 체결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시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39조)

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2026-02-04 발의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여재산의 위험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사전에 예측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기 전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3인)

2026-01-26 발의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2026-02-04 발의

인공지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포함한 다각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함.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필수 인프라 요소 중 하나로서,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빅테크 기업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5인)

2026-02-05 발의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2026-02-06 발의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6-02-03 발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 (안 제2조제4호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상인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함

②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 (안 제12조의2제1항)**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③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 (안 제12조의2제2항)**

-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④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 (안 제12조의2제2항)**

-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02-05 발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 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02-05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5인)

2026-02-05 발의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2026-02-03 발의

바이러스 간염(B형·C형)은 세계적인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암종별 사망률 2위인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 또한 바이러스 간염은 치료 시기를 놓쳐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2023년에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도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02-03 발의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

2026-02-02 발의

최근 구인·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2026-02-02 발의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②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③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6-02-03 발의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86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법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노무제공자’, ‘종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임금’의 정의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임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9인)

2026-02-03 발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산업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예측·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활용, 성과·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026-02-04 발의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의 소규모 용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타목,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5인)

2026-02-03 발의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극소수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의 무주택 서민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현행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어(무주택자와 전용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는 가능, 현행법 시행령) 토지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어렵고,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에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6-01-27 발의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6인)

2026-02-06 발의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규제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조차 잔금 대출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신뢰하여 청약에 참여한 국민에게 사후적인 정책 변경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의4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2/9(월) 14:00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10(화) 14:00	- 대정부질문(경제 분야)
	2/11(수) 14:00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2/10(화) 10:00	- 업무보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11(수) 10:00	-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위	전체회의	2/9(월) 10:00	-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전체회의	2/12(목) 10:00	- 법안 의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2/12(목) 10:00	- 법안 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2/10(화) 10:00	- 법안 상정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9(월) 10:00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권칠승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2/10(화) 10:00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	김원이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2/10(화) 14:00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 국회물포럼 제 33차 토론회	한정애·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11(수) 10:00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광주' 실증도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모델 구축 방안	정준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2/11(수) 10:00	K-원전, 규제에 달렸다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수) 14:00	NSF 아·태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우재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2/12(목) 14:00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	조계원·김문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2/13(금) 10:00	우주 AI 데이터센터 토론회	이주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2/9(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2호(통권 제26호) 발간	국회도서관	
	2/11(수)	「금주의 서평」 제2026-6호(통권 제765호) 발간		
	2/10(화)	「NABO Focus」 제136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2/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호(통권 제290호)	국회도서관	
	2/4(수)	「금주의 서평」 제2026-5호(통권 제764호)		
	2/2(월)	「NABO Focus」 제134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3(화)	환경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2/4(수)	지적재산권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5(목)	지적재산권	특허권 균등침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5(목)	유라시아	러시아 현지 자회사 운영 현황과 법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2/6(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 21. - 2026. 2. 3.)
2/6(금)	금융	금융회사 SaaS 이용 관련 망분리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